행정안전부	보 도 자 료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	모두의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('23.1.27)

보도 일시	2023. 3. 7.(화) 10:00		
담당 부서 <총괄>	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정책과	책임자	과 장 이현정 (044-205-3802)
		담당자	사무관 손우승 (044-205-3807)

「지방세입 관계법령」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

-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등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적극 지원 -

□ 행정안전부는 「**지방세입 관계법률***」 및 **시행령 공포안**이 3월 7일(화) **국무회의에서 의결**되었다고 밝혔다.

* (5개 법률) 「지방세기본법」, 「지방세징수법」, 「지방세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,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

○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중 **공포**되어 **즉시 시행**될 **예정**으로, 개정안의 **소급 적용 규정***에 따라 이미 **납부한 금액**보다 **납부**해야 할 **금액**이 적어지는 경우, **자치단체**에 **경정청구**를 통해 **환급**받을 수 있다.

* 지방세 감면 규정은 대부분 '23.1.1.로 소급적용 (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'22.6.21.로 소급)

※ (지방세 감면 환급절차) ① 감면 대상자가 이미 신고·납부한 자치단체(시·군·구)에 경정청구 → ② 자치단체 경정 결정 후 환급

□ 이번 개정안은 **청년·고령층** 등을 비롯한 **서민·취약계층**의 **민생부담**을 **완화**하고 **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기업 지원** 등을 통해 **지역경제 활력**을 높이는 데 **중점**을 두었다.

1 정책 대상별 지원

□ **(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) 국민**의 **내 집 마련**을 **지원**하기 위해 **주택**(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)을 **생애 최초**로 **구입**하는 경우, 주택 **취득세**를 **200만원 한도 내**에서 **전액 면제**한다.

※ (현행) 생애 최초 주택 취득하는 경우, 수도권 4억원,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 대상 부부합산소득 7,000만원 이하의 경우에 한해 1.5억원 이하 주택은 100%, 1.5억원 초과 주택은 50% 감면 중

○ 이번 **감면 확대 규정**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**2022년 6월 21일** 이후 **생애 최초로 주택**을 **취득**하는 경우부터 **소급 적용**되며, **납세자**들이 이미 **납부**한 **취득세**는 **환급 신청**을 통해 **돌려받을 수** 있다.

○ 이번 개정안을 통해 **신혼부부 등 청년**들의 **주거비용 부담**을 줄이고, **침체**되어 있는 **부동산 거래**를 일부 **활성화**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**(고령자) 고령자** 등에 대한 **주택 재산세 납부유예** 제도를 **도입**한다. **일정요건***을 갖춘 **1주택자**가 **납부 유예**를 **신청**하는 경우, **주택의 처분**(양도, 증여, 상속) **시점**까지 **재산세 납부**를 **유예**하는 것이 **가능**해진다.

* ①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, ② 1세대 1주택, ③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(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), ④ 해당연도 재산세 100만원 초과, ⑤지방세·국세 체납이 없을 것

○ 또한 **고령자**들에 대한 **가족 돌봄**을 **지원**하기 위해 **조부모**와 함께 거주하면서 **별도 주택**을 **취득** 또는 **보유**하는 경우 **조부모**와 **별도 세대**로 **간주**하도록 한다.

- **현재**는 65세 이상의 **부모**를 **부양**하는 **경우에 한해 별도 세대**로 **간주**하여 **취득세 다주택 중과** 적용을 **완화**하였으나, 앞으로는 **조부모**를 **부양**하는 경우까지 **확대**한다.

- 또한 **재산세 1세대 1주택자 특례*** 적용에 있어서는 **조부모**를 **부양**하는 경우에도 별도 세대로 보고 **특례**를 **적용**받게 된다.

* 주택 재산세 과표구간별 0.05%p 세율 인하

□ **(근로소득자/영세 자영업자 등)**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**하위 2개 구간**을 각각 **1,200만원→1,400만원, 4,600만원→5,000만원**으로 **조정**한다. 국세인 **소득세**와의 **동반 개정사항**으로 해당 **과표구간**을 주로 적용받는 **중산층**의 **소득세 부담**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.

구분	현 행		개 정	
개인지방소득세	1,200만원 이하	0.6%	**1,400만원 이하**	0.6%
	1,200~4,600만원	1.5%	**1,400~5,000만원**	1.5%
	4,600~8,800만원	2.4%	**5,000**~8,800만원	2.4%
	8,800만원~	3.5~4.5%	(현행과 같음)	

○ 또한 종합소득에 대한 **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**를 신설하여, **납부할 세액**이 **100만원**을 **초과**하는 경우 **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**가 **가능**하게 한다.

※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(5월) 납부기한 : (종전) 5월내 납부 → (변경) 7월까지 분할납부 가능

○ 아울러, **개인사업자**의 **부담경감**을 위해 **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대상**을 **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,800만원 이상**에서 **8,000만원 이상**으로 완화하였다.

※ ('21년 기준) 주민세 사업소분 289억원 및 지방교육세 42억원 감세 효과 예상

□ (기업) 법인지방소득세 각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0.1%p 인하하여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한다.

※ 국세인 법인세와 동반 개정사항

구분	현 행		개 정	
법인지방소득세	2억원 이하	1%	2억원 이하	**0.9%**
	2~200억원	2%	2~200억원	**1.9%**
	200~3,000억원	2.2%	200~3,000억원	**2.1%**
	3,000억원 초과	2.5%	3,000억원 초과	**2.4%**

○ 또한 사업자가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*를 차감하는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를 지방세에도 도입하여 예상치 못한 사고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한다.

* (차감계산식) 법인지방소득세액 – 차감액(법인지방소득세액 × 「법인세법」 상 자산상실비율)

2 분야별 감면 지원

□ (지역경제) 인구감소지역* 내 창업·사업장 설치 및 사업전환 기업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신설하는 등 기업투자를 촉진하고, 지역경제 활력을 높인다.

*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, 출생률·인구 구조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·고시하는 지역(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」 제2조 등)

○ 인구감소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하는 기업에게는 취득세 100%, 재산세 5년간 100%(이후 3년간 50%)를 지원하고, 사업전환 기업에는 취득세 50%, 재산세 5년간 50%를 지원한다.

○ 또한 외국기업 투자유치 강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*을 3년 연장하고, 지자체 실정에 맞게 15년 한도로 조례를 통한 추가 감면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.

* (일반투자) 취득세·재산세 5년간 100%(이후 2년간 50%),
(신성장동력 사업 사용+사업양수 방식 취득) 취득세·재산세 3년간 100%(이후 2년간 50%),

○ 산업·물류단지, 중소기업, 농업·임업 등 지역의 주요 경제적 기반 분야들에 대한 감면지원을 연장하거나 확대하여 지역별 중점 산업단지 조성과 열악한 환경에 있는 중소기업·농업인에 대한 지원 등을 지속 유지할 예정이다.

구 분		현 행 (감면율)	개 정 (감면율)
산업단지	시행자	취득세 35%, 재산세 35%	**감면 연장**
	입주기업	취득세 50%(조례 25% 추가 可), 재산세 35%	
물류단지	시행자	취득세 35%, 재산세 35%	**취득세 35%, 재산세 25%** (조례 10%p 추가 可)
	입주기업	취득세 50%, 재산세 35%(5년 간)	**감면 연장**
지방중소기업센터		취득세·재산세 50%	**감면 연장**
농지확대개발 토지		취득세 100%	**감면 연장**
임업후계자 토지		취득세 100%	**감면 연장**

□ (산업혁신) **신성장·친환경 산업 혁신**을 **지원**한다. 산업혁신을 촉진하는 **기업부설연구소**에 대한 **취득세·재산세 감면**을 **3년 연장**한다. 특히 **신성장·원천기술*** 연구소에 대한 **추가 감면율**을 10%p에서 15%p로 **확대**한다.

* ① 자율주행·전기차 ② 인공지능 ·사물인터넷 등 IT ③ 통신 ④ 바이오 ⑤ 원자력 ⑥ 항공·우주 ⑦ 반도체 ⑧ 탄소중립 등 (「조특법」 시행령 별표7)

구 분		현 행 (감면율)		개 정
기업부설 연구소	대기업, 중견기업	취득세 · 재산세 35% ※ 대기업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외 限	신성장·원천기술 10%p 추가 감면	**감면 연장 및 확대** ※ 신성장 · 원천기술 15%p 추가 감면(현행 대비 +5%p)
	초기중견	취득세 · 재산세 50%		
	중소기업	취득세 60% · 재산세 50%		

○ 또한, 창의성 · 잠재력이 높은 **벤처기업**의 **성장**을 **지원**하기 위해 **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* 내 기업**에 대한 **취득세 감면**을 37.5%에서 50%까지 **확대**한다.

* 대학 · 연구기관 · 지원기관 등이 집적되어 벤처기업의 밀집 또는 밀집 가능성이 높은 지역 (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장의 신청에 따라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지정)

○ 아울러 **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기술 개발 촉진** 등을 위해 **하이브리드(혼합형)차 구매자**에 대한 **취득세 면제**도 **현행수준**으로(40만원 한도) **2년 연장**한다.

□ (물가안정) **농 · 수산물 가격, 물류비** 등 **민생물가**의 **인상 요인**을 **완화**하기 위해 **유관 공공기관**에 대한 **지방세 감면 지원**을 **유지·확대**한다.

구 분		현 행 (감면율)	개 정 (감면율)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		취득세 · 재산세 50%	**감면 연장**
지방농수산물 공사	고유업무 부동산	취득세 · 재산세 100%	**취득세 · 재산세 100%**
	법인 등기	등록면허세 100%	
한국철도 공사 등	철도여객 사업용 부동산	취득세 25% · 재산세 50%	**감면 연장 및 신설** ※ SR 철도차량 감면 신설 (취득세 25%)
	철도차량	취득세 50% (고속철도 : 25%)	
도시철도공사		취득세·재산세·등록면허세 100%	**감면 연장**

□ (사회복지) **두터운 사회복지 지원**을 위해 **사회복지법인** 및 일부 **사회복지시설**(무료 양로원, 보육원, 모자원, 한센병 요양시설)에만 **지방세 감면 혜택**을 부여했던 것을 **사회복지시설 전체**로 **확대**한다.

○ **감면지원**이 **확대**되는 **사회복지시설**을 **유·무료**로 **구분**하고 **감면지원율**을 **차등화**하여 **무료시설**은 **취득세 100%·재산세 50%, 유료시설**은 **취득세·재산세 25%**(단, 유·무료 시설 모두 조례로 50%p 추가 가능)를 **지원**한다.

○ 이번 개정 조문을 적용받는 **감면 대상 사회복지시설**이 기존 **약 3천개소**에서 **약 1.1만개소 이상**으로 **대폭 확대**됨에 따라 **취약계층**을 지원하는 **사회복지시설 운영**에 **큰 도움**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**행정안전부**는 **지방세입 관계법령 시행**에 따라 **지방세 환급**이 **안정적**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**안내**하고, 각 자치단체가 **조례**를 조속히 **정비**하도록 **지원**하는 등 **시행에 차질**이 없도록 **만전**을 **기할 계획**이다.

□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2년 12월 21일 발표된 **다주택자 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**와 관련해서도, 2월 임시국회에서 **여야 합의**에 이르지 못했지만 **향후 추가 논의**하기로 한 만큼,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**조속히 처리**될 수 있도록 **각별히 노력**하겠다고 밝혔다.

□ **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**은 "이번 **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안**은 **고물가** 등으로 인한 **민생경제**의 **부담**을 **완화**하고, **침체**된 **지역경제**에 **활력**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다"라며, "**개정 지연**에 따른 **혼란**이나 **세제혜택**에서 **누락**되는 **일**이 **없도록** 환급 등 **후속절차**를 꼼꼼히 **챙기겠다**"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<총괄>	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정책과	책임자	과 장	이현정 (044-205-3802)
		담당자	사무관	손우승 (044-205-3807)
	지방재정경제실 부동산세제과	책임자	과 장	홍삼기 (044-205-3831)
		담당자	서기관	한수덕 (044-205-3836)
	지방재정경제실 지방소득소비세제과	책임자	과 장	진선주 (044-205-3871)
		담당자	서기관	천혜원 (044-205-3872)
	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특례제도과	책임자	과 장	권순태 (044-205-3851)
		담당자	사무관	박현정 (044-205-3852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 1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(요약)

1 지방세기본법

제목	주요 내용	소관과
① 기한의 특례규정에 대체 공휴일 명확화	○ 신고·납부 등 기한이 「공휴일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대체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·납부토록 규정	지방세정책과
② 증여에 대한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	○ 부담부증여*로 인한 취득에 대한 제척기간을 유·무상 여부의 구분 없이 증여와 동일하게 10년으로 규정 * 증여자의 채무를 포함하여 인수하는 증여로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상, 나머지는 무상으로 취득세 과세	지방세정책과
③ 재산의 실질귀속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	○ 판결 등에 의하여 재산의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른 사실 확인시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척기간 규정	지방세정책과
④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	○ 상속인이 2인 이상일 경우 유류분을 청구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로 납세의무를 승계토록 규정	지방세정책과
⑤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확대	○ 판결 뿐만 아니라 심판청구 및 「감사원법」에 따른 심사청구에 따른 결정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포함	지방세정책과
⑥ 지방세 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	○ 납세자가 환급금에 관한 권리 양도시 양도인·양수인의 체납세액 충당 후 양도	지방세정책과
⑦ 세무조사 개시절차 신설	○ 천재지변 등 사유*로 세무조사 연기 후 연기사유 소멸 시 또는 조세채권 확보 필요시 세무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 *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상 어려움이 있거나, 납세자의 질병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	지방세정책과
⑧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결정 시 심판청구 기간 규정 명확화	○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 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 기간 경과일부터 심판청구 가능	지방세정책과
⑨ 재조사 결정 관련 예외사유 명확화	○ 재조사 결정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이 다른 경우 등은 원처분 유지	지방세정책과

2 지방세징수법

제목	주요 내용	소관과
① 납기 전 징수사유 확대	○ 납기 전 징수사유 확대 및 구체적 명시 - (현행) 강제집행을 받을 때 → (개선) 「민사집행법」에 따른 강제집행을 받거나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로 개정	지방세정책과
② 지방세 납부방법 확대	○ 지방세 납부방법을 현금(계좌이체), 증권, 신용카드에서 - 직불카드, 통신과금서비스(핸드폰 소액결제) 납부방법 확대	지방세정책과
③ 공매대상 재산을 평가하는 감정인의 현황조사 권한 부여	○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위해 감정인이 현황조사를 할 때 건물출입, 체납자·건물점유자에게 질문 또는 문서제시 요구 권한 부여 - 단, 현황조사 외 조사권한 남용 금지	지방세정책과
④ 압류재산 매각결정 기일 연장	○ 공매개찰 후 매각결정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기간 확대 - 매각결정 기일을 개찰일로부터 3일 → 7일(공휴일 등 제외)로 연장	지방세정책과
⑤ 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규정 신설	○ 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체납자 등에게 통지 규정 신설 ※ 공매, 수의계약시에는 체납자 등에게 매각사실 통지	지방세정책과

3 지방세법

<table>
<tr><th>제목</th><th>주요 내용</th><th>소관과</th></tr>
<tr><td>① 재산세 납부유예제도 도입</td><td>○ 일정 소득 이하 등 요건을 갖춘 1주택 고령자·장기보유자에 대해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주택 재산세 납부 유예</td><td>부동산세제과</td></tr>
<tr><td>② 과표상한제 도입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법정 범위 조정</td><td>○ (과표상한제) 매년 과표의 증가 한도(5% 이내)를 설정('24년~)
※ 현행 주택 세부담상한제는 5년간 한시 운영 후 폐지('24년~'28년)
○ (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법정 범위 조정) 현행 40~80%에서 30~70%로 범위 하향 조정</td><td>부동산세제과</td></tr>
<tr><td>③ 재개발사업·도시개발사업 취득세 과세체계 개선</td><td>○ 재개발사업·도시개발사업 취득세 과세를 과세대상별*로 규정 * 건축물, 토지, 토지 지목변경
○ 지방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, 취득 원인을 규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감면을 규정</td><td>부동산세제과</td></tr>
<tr><td>④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</td><td>○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(하위 2개 구간 상향)
<table>
<tr><th>과세표준</th></tr>
<tr><td>1,200만원 이하</td></tr>
<tr><td>1,200~4,600만원</td></tr>
<tr><td>4,600~8,800만원</td></tr>
<tr><td>8,800만원~</td></tr>
</table>
➡
<table>
<tr><th>과세표준</th><th>세율</th></tr>
<tr><td>1,400만원 이하</td><td>0.6%</td></tr>
<tr><td>1,400~5,000만원</td><td>1.5%</td></tr>
<tr><td>5,000~8,800만원</td><td>2.4%</td></tr>
<tr><td>(현행과 같음)</td><td>3.5~4.5%</td></tr>
</table></td><td>지방소득소비세제과</td></tr>
<tr><td>⑤ 연금소득 개인지방소득세 과세방식 개선</td><td>○ 연금소득이 1,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종합과세와 분리과세(1.5%) 중 선택 가능
※ 선택에 따른 세액계산 방식을 규정</td><td>지방소득소비세제과</td></tr>
<tr><td>⑥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</td><td>○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, 2개월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</td><td>지방소득소비세제과</td></tr>
<tr><td>⑦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 마련</td><td>○ 금융상품(주식·채권 등)의 양도·환매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'금융투자소득(신설)'으로 분류하여 과세 ※ '25년부터 시행</td><td>지방소득소비세제과</td></tr>
<tr><td>⑧ 법인지방소득세율 인하</td><td>○ 법인지방소득세율 0.1%p 인하(과표구간별)
<table>
<tr><th>과세표준</th><th>세율</th></tr>
<tr><td>2억원 이하</td><td>1%</td></tr>
<tr><td>2~200억원</td><td>2%</td></tr>
<tr><td>200~3,000억원</td><td>2.2%</td></tr>
<tr><td>3,000억원 초과</td><td>2.5%</td></tr>
</table>
➡
<table>
<tr><th>과세표준</th><th>세율</th></tr>
<tr><td>2억원 이하</td><td>0.9%</td></tr>
<tr><td>2~200억원</td><td>1.9%</td></tr>
<tr><td>200~3,000억원</td><td>2.1%</td></tr>
<tr><td>3,000억원 초과</td><td>2.4%</td></tr>
</table></td><td>지방소득소비세제과</td></tr>
<tr><td>⑨ 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 제도 도입</td><td>○ 사업자가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일부를 차감하는 '재해손실세액차감' 제도 신설</td><td>지방소득소비세제과</td></tr>
<tr><td>⑩ 주민세 사업소분 가산세 부과에 대한 특례 연장</td><td>○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율(구 균등분)에 대한 가산세* 특례(면제) 적용기한을 '24년까지 2년 연장
* 무신고가산세, 과소·초과환급가산세, 납부지연가산세</td><td>지방세정책과</td></tr>
</table>

4 지방세특례제한법

제목	주요 내용	소관과
①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	○ 12억원 이하 주택 대상 연소득 관계없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	지방세특례제도과
②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및 사업장 신설·이전 기업 감면 신설	○ 인구감소지역 인구 유입·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창업·사업장 설치 및 사업전환 기업에 대하여 취득세·재산세 특례* 신설 * (창업·사업장신설·사업장이전 기업) 취득세 100%, 재산세 5년간 100%(이후 3년간 50%), (사업전환기업) 취득세 50%, 재산세 5년간 50%	지방세특례제도과
③ 기업부설연구소 추가 감면율 확대	○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면서, 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소에 대한 추가 감면율을 확대(10%p→ 15%p)	지방세특례제도과
④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內 감면율 확대 및 조례 감면 자율성 부여	○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內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(37.5→50%)하고, 조례를 통한 재산세 추가 감면 자율성 부여	지방세특례제도과
⑤ 외투기업 감면 연장 및 조례 감면 자율성 부여	○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외투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* 3년 연장, 조례를 통한 추가 감면지원 가능(최대 15년) * (일반투자) 취득세·재산세 5년간 100%(이후 2년간 50%), (신성장동력 사업 사용+사업양수 방식 취득) 취득세·재산세 3년간 100%(이후 2년간 50%),	지방세특례제도과
⑥ SR 철도차량 취득세 감면 신설	○ SR 고속철도차량 취득세 25% 감면 신설	지방세특례제도과
⑦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감면 연장·확대	○ 두터운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등 감면 연장, 감면 대상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 ※ 사회복지시설을 유·무료로 구분하고 감면지원율 차등화 (무료취득세 100%·재산세 50%, 유료취득세·재산세 25%)(단, 유·무료 시설 모두 조례로 50%p 추가 가능)	지방세특례제도과

5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

제목	주요 내용	소관과
①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 납부증명서 의무제출 기관 확대	○ 국가와 공공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부증명서 제출을 의무화 ※ 현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만 제출하도록 규정	지방소득소비세제과
② 제3자의 납부 근거 마련	○ 납부 편의성 향상과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 제3자 납부 규정 신설	지방소득소비세제과
③ 상속재산 등에 관한 체납처분 근거 명확화	○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체납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상속재산 또는 존속법인 등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근거 신설 ※ 현재「국세징수법」제27조(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 강제징수의 속행 등) 준용	지방소득소비세제과

참고 2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안 주요 지원내용

1 정책 대상별 지원

대상	주요내용	소관과
생애최초 주택 구입자	• 취득세 **(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)** 12억원 이하 주택 대상 연소득 관계 없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	지방세 특례 제도과
고령자	• 재산세 **(납부유예제도)** 일정 소득 이하 등 요건을 갖춘 1주택 고령자·장기 보유자에 대해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주택 재산세 납부 유예	부동산 세제과
	• 취득세 **(조부모 부양 시 취득세 중과완화)** 조부모 부양 시 별도 세대로 간주하여 1세대 다주택 중과 완화	부동산 세제과
	• 재산세 **(조부모 부양 시 재산세 특례 적용)** 조부모 부양 시 별도 세대로 간주하여 1세대 1주택 특례(세율 0.05%p인하) 적용 확대	부동산 세제과
근로소득자/영세 자영업자 등	• 소득세 **(개인지방소득세 과표기준 완화)**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하위 2개 구간을 조정(1,200만원→1,400만원, 4,600만원→5,000만원)	지방소득 소비 세제과
	• 소득세 **(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)**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분할납부 제도 신설 (100만원 초과시 2개월 내 분할납부 가능)	지방소득 소비 세제과
	• 주민세 **(주민세 과세대상 완화)** 개인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과세 대상을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완화	지방세 정책과
기업	• 소득세 **(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인하)** 각 과표구간에서 세율 0.1%p씩 인하 • 소득세 **(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 도입)** 사업자가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, 세액 일부를 차감	지방소득 소비 세제과

2 분야별 감면 지원

분야		주요내용	소관과
지역경제	인구감소지역	• 취득세 재산세 인구감소지역 인구 유입·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창업·사업장 설치 및 사업전환 기업에 대하여 취득세·재산세 특례 신설 * (창업·사업장신설·사업장이전 기업) 취득세 100%, 재산세 5년간 100% (사업전환기업) 취득세 50%, 재산세 5년간 50%	지방세 특례 제도과
	외국인 투자기업	• 취득세 재산세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외투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3년 연장, 조례를 통한 추가 감면지원 가능(최대 15년)	지방세 특례 제도과
산업혁신	기업부설 연구소	• 취득세 재산세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면서, 신성장·원천 기술 연구소에 대한 추가 감면율을 확대(10%p→ 15%p)	지방세 특례 제도과
	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	• 취득세 재산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(37.5→50%)하고, 조례를 통한 재산세 추가 감면 자율성 부여	지방세 특례 제도과
물가안정	한국철도공사 등	• 취득세 재산세 교통요금 및 물류비 인상 요인 완화를 위해 한국철도공사 및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감면지원 연장 • 취득세 SR 철도차량 취득세 감면(25%) 신설	지방세 특례 제도과
	농수산물 공사	• 취득세 재산세 농·수산물 가격 안정 지원을 위해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및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3년 연장	지방세 특례 제도과
사회복지	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	•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두터운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등 감면 연장, 감면 대상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 ※ 사회복지시설을 유·무료로 구분하고 감면지원율 차등화 (무료취득세 100%·재산세 50%, 유료 취득세·재산세 25%(단, 조례로 50%p 추가 가능))	지방세 특례 제도과